

國內外 職務發明 补償制度

○○○○工業株式會社

■ 國內企業 職務發明規程事例 (197 제정) (規程 第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規程은 會社從業員에 對한 發明을 保護, 嘉勵하여 職務에 관한 研究開發意慾을 鼓吹시키고 그에 따른 特許權 및 其他 工業所有權의 合理的인 管理運營을 하므로서 會社의 發展은 勿論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 義)

이 規程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 “職務發明”이라 함은 會社 從業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上 會社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從業員의 現在 또는 過去의 任務에 屬하는 것을 말한다.
- “自由發明”이라 함은 前號의 規定에 의한 發明以外의 會社從業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
- “發明者”라 함은 職務發明을 한 會社從業員을 말한다.
- “從業員”이라 함은 會社의 社員, 雇員 및 常勤囑託을 말한다.

第3條(權利의 承繼)

- 職務發明은 會社가 그 權利를 承繼한다. 다만 會社가 그 權利를 承繼할 必要 또는 價值가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從業員이 한 職務發明이 第3者와 共同으로 한 것인 境遇에는 그 發明者가 가지는 權利의 持分만을 承繼한다.

第4條(發明者에 대한 补償)

會社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이 規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补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5條(主務部署)

職務發明의 主務部署는 本社 總務部로 한다.

第2章 屆出 및 出願

第6條(屆 出)

- 發明을 한 從業員은 그 發明의 内容을 別紙書式 第1號의 “業務와 關聯된 發明屆出書”에 의하여 所屬部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所屬部署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届出을 받은 때에는 그 權利의 承繼 등에 關한 意見을添附하여 擔當重役의 承認을 얻어 主務部署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7條(審 査)

- 主務部署長은 前條에 의하여 届出된 發明을 職務發明審查委員會(以下 “委員會”라 치함)의 審議에 送付하여야 한다.
- 委員會는 當該 送付된 發明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 當該 發明의 特許性 및 職務發明의 與否
 - 會社가 權利를 承繼할 것인가의 與否
 - 第13條의 規定한 登錄 补償金

第8條(出願)

前條의 審查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權利를 會社가 承繼한 것을 결정한 때에는 主務部署長은 社長의 承認을 얻어 즉시 會社名義로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第9條(發明者의 通知)

主務部署長은 第7條第2項에 의한 委員會의 審查結果

■國內企業 職務發明規程事例

果를迅速히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0條(特許權 받을 權利의 讓渡義務)

發明者は 會社가 第 8 條의 规定에 따라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할 것을 決定한 때에는 그 權利를 會社에 讓渡하여야 한다.

第11條(再審請求)

- ① 發明者は 第 9 條의 规定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查結果를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委員長에게 文書로써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再審請求는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主務部署長에게 提出한다.
- ③ 主務部署長은 前項의 再審請求를 받은 때에는 委員長에게 當該 發明의 再審查를 위한 委員會의 開議를 要請한다.
- ④ 前項의 再審結果 委員會가 權利 承繼 決定을 한 때에는 主務部署長은 第 8 條의 规定에 따라 出願을 하고 拒絕을 하는 때에는 理由書를添付하여 所屬部署長을 經由 當該 發明者에게 通知해야 한다.

第12條(出願 등 制限)

發明者は 會社가 當該 發明者의 發明이 職務發明이 아니라고 認定하거나 또는 職務發明일지라도 그 特許를 받을 權利를 會社가 承繼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한 後가 아니면 特許出願을 하거나 또는 特許를 받을 權利를 第 3 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 3 章 补 償

第13條(登録補償)

- ① 會社가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하여 이것이 登錄되었을 때에는 그 發明의 優秀性 및 實用價值 등을 參酌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權利 每件마다 다음 基準에 依據 登錄補償金을 支給한다.

等級	特許	實用新案	意匠
1 級	1,000,000	600,000	300,000
2 級	600,000	300,000	100,000
3 級	300,000	100,000	50,000
4 級	100,000	50,000	20,000
5 級	50,000	20,000	10,000

- ② 主務部署長은 前項의 權利登錄 및 登錄補償金 支給決定을 別紙書式 第 2 號의 「特許(考案)登錄通知書」에 의하여 遲滯없이 發明者 또는 支給받을 者에게 通知한다.

③ 特許出願을 한 發明에 대해서는 第 1 條에 規定한 登錄補償金 中一部를 우선 支給할 수 있다.

第14條(實績補償)

- ① 主務部署長은 出願 또는 登錄된 發明의 實施活用狀況을 年 2回에 걸쳐 調査하여 委員會에 報告한다.
- ② 前項의 調査結果 出願 또는 登錄된 發明의 實施效果가 會社經營實績에 顯著한貢獻을 하였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 基準에 따라 實績補償金을 支給한다.
다만, 特許 3回, 實用新案 2회, 意匠 1회를 超過하지 못한다.

等級	A 級	B 級	C 級	D 級	E 級
金額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第15條(處分補償)

第 8 條의 规定에 따라 出願하여 會社所有로 登錄된 特許權을 讓渡, 實施許與 또는 其他 處分을 한 때에는 그 特許權의 內容 및 收入金 등을 參酌하여 發明者에게 다음 各號의 补償金을 支給한다.

1. 特許權의 實施를 有償으로 許與한 때에는 그 實施料收入金의 5%以上 10%以下에 該當하는 金額
2. 特許權을 有償으로 讓渡한 때에는 그 代金의 5%以上 10%以下에 該當하는 金額
3. 職務發明을 第 3 者에게 無償으로 實施을 許與한 때에는 第14條 第 2 條의 基準에 따른 金額

第16條(補償金의 持分支給)

第3條의 补償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2人以上일 경우에는 그 持分에 따라 支給한다.

第17條(退職 및 死亡後의 支給)

- ① 發明者가 退職한 경우에는 第13條 대지 第15條에 定한 补償金의 2分의1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 ② 發明者가 死亡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补償金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18條(補償金의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补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경우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가 冒認에 의하여 無効가 된 경우에 그 러하지 아니한다.

第19條(異議申請)

- ① 發明者 또는 补償金을 支給받을 權利가 있는 者

는 會社가 第14條 대지 第17條에 定한 補償金을 支給치 않거나 또는 不當한 支給을 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30日以內에 社長에게 文書로써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異議申請은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主務部署長에게 提出한다.
- ③ 主務部署長은 前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진상을 調査한 後 委員會에 報告하고 그 審議를 要請한다.
- ④ 前項의 審議結果 委員會가 새로이 補償金을 支給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主務部署長은 즉시 社長의 承認을 얻어 그 決定에 따라 執行하여야 한다.

第4章 職務發明審查委員會

第20條(職務發明審查委員會)

職務發明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生產擔當 專務理事 所屬下에 職務發明審查委員會를 둔다.

第21條(委員會의 構成)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과 委員 9人 以內로 構成한다.
- ② 委員長은 生產擔當 專務理事, 副委員長은 技術擔當理事가 되고 委員은 主務部署長, 開發部長, 管理部長 및 委員長이 提請하여 社長의 承認을 얻어 任命한 者로 한다.
- ③ 委員會의 諮問에 應하기 為하여 委員長은 專門家를 諮問委員으로 委嘱할 수 있다.
- ④ 諮問委員의 委嘱은 委員長이 提請하여 社長이 한다.

第22條(委員長)

-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 ②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委員長 및 副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主務部署長이 委員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23條(委員會의 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7條 第2項에 定한 事項
2. 特許權 獲得에 따른 評價 및 補償金決定에 關한 事項
3. 特許權讓渡, 實施許與 및 其他 處分에 關한 事項
4. 發明者의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5. 職務發明規程의 改正 및 運用에 關한 事項
6. 其他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4條(委員會의 議事 等)

- ① 委員長은 主務部署長의 召集 要求가 있는 때 또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②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過半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 ③ 表決結果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25條(幹 事)

- ① 委員會는 幹事 1人을 둔다.
- ② 幹事는 主務部署長이 指名하는 者로 한다.
-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議案件을 整理하고 庸務를 處理한다.

第5章 雜 則

第26條(自由發明의 承繼)

- ① 會社는 自由發明에 대하여 發明者로부터 別紙書式 第3號의 “自由發明(特許權)讓渡申請書”에 의한 特許를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을 會社에 讓渡한다는 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 規程에서 定하는 職務發明의 承繼節次에 準하여 決定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에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境遇에는 第13條 대지 第18條를 特許權을 承繼한 境遇에는 第14條 대지 第18條를 각各 準用한다.

第27條(秘密保持)

發明者 또는 이 規程에 의하여 職務發明에 關한 業務를 取扱하는 者는 그 職務發明의 内容에 대한 秘密을 지켜야 한다.

第28條(發明者의 協力義務)

發明者는 그가 한 職務發明의 處分 또는 實施에 있어서 會社 또는 實施 許與를 받은 者가 必要로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力할義務가 있다.

第29條(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關한 準用)

이 規程은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도 準用한다.

第30條(外國出願의 取扱)

이 規程은 外國의 工業所有權을 對象으로하는 發明에 대해서도 이를 準用한다.

附 則

(施行日) 이 規程은 19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國內企業 職務發明規程事例.....

(別紙 第1號書式)

業 務 와 關 聯 된 發 明 展 出 書						
發 明 者	(1) 姓 名	(한글) (한문)	(2) 住民登錄番號			
	(4) 本 籍	(3) 生 年 月 日				
	(5) 住 所					
	所 屬	(6) 現 在	職位	(8) 現 在		
		(7) 發明當時			(9) 發明當時	
發 明 事 項	(10) 發明의 種別	特許, 實用新案, 意匠	(12) 發明의 性質			
	(11) 發明의 名稱			職務發明, 自由發明		
職務發明規程 第6條 第1項에 의 하여 本人의 業務와 關聯된 發明을 展出합니다.						
届出年月日 197						
届出人 ㊞						
○○○○株式會社 貴下						
添付: 發明明細書 1部						
所長 屬意 部署見						所屬部署長 ㊞

(別紙 第2號書式)

特 許 (考 案) 登 錄 通 知 書						
特 許 登 錄	發 明 者	(1) 姓 名	(한글) (한문)	(2) 住民登錄番號		
		(4) 住 所				
	所 屬	(5) 現 在		職 位	(7) 現 在	
		(6) 發明當時			(8) 發明當時	
		(9) 發明의 種類	特許, 實用新案, 意匠			
(10) 發明의 名稱						

登 錄 補 償 金	(11) 登 錄 番 號		(12) 登 錄 年 月 日		
	支 給 者	(13) 姓 名	(한글) (한문)	(14) 住 民 登 錄 番 號	
		(16) 住 所		(15) 生 年 月 日	
	所 屬	(17) 現 在		職 位	(19) 現 在
		(18) 發明當時			(20) 發 明 當 時
	(21) 支 納 決 定 年 月 日				
	(22) 支 納 決 定 額				

職務發明規程 第13條 第2項에 의하여 特許(考案) 登錄畢 및 支給決定된 登錄補償金을 위와 같이 通知함.

19

總務部長

印

貴下

添付：特許(考案)登錄證寫本

(別紙 第3號書式)

自由發明(特許權)讓渡申請書

發 明 者 發 明 의 表 示	(1) 姓 名		(한글) (한문)	(2) 住 民 登 錄 番 號		
				(3) 生 年 月 日		
	(4) 本 籍					
	(5) 住 所					
	所 屬	(6) 現 在		職 位	(8) 現 在	
		(7) 發明當時			(9) 發明當時	
	(10) 發明의種類		特許, 實用新案, 意匠	(12) 發明의內容		別添
(11) 發明의名稱						

職務發明規程 第25條 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本人의 發明(特許權)을 會社에 讓渡하고자 申請합니다.

19

請申人

㊞

○○○株式會社 貴下

添付： 1) 發明明細書 1部

2) 特許證寫本 1部

■ 外國企業 職務發明規程事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本規程은 회사의 종업원에 발명을 장려함과 더불어 그 發明者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발명에 따라 얻은 特許權의 관리 및 실시의合理的運用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 발명을 나누어 職務발명 및 기타의 발명으로 한다.
- 직무발명이라 함은 발명이 그 성질상 회사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함에 이들 行爲가 회사에서 從業員의 現在 또는 過去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기타 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第3條(權利의 歸屬)

- 직무발명은 회사가 그 권리를 承繼한다. 다만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가 없다고 認定할 때는 예외이다. 더우기 회사가 승계할 때는 이를 有償으로 한다.
- 종업원이 社外의 個人 또는 團體와 共同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때는 그 종원업의 발명에 관한 持分의 승계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다.

第2章 届出 및 出願

第4條(届出)

- 발명을 한 종업원은 빨리 그 발명의 내용을 자기의 所屬長에게 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소속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계출에 관계되는 내용에 권리의 귀속 등에 관한 意見書를 첨부하여 發送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5條(出願)

- 회사는 前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계출이 있을 때는 職務發明審查會(以下 심사회라 함)의 審議를 거쳐 그 계출에 관계되는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를 인정하여 직무발명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그 발명

에 대해 特許를 받을 권리를 회사로서 승계여부의 결정을 한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곧 特許出願을 한다.

第6條(發明者 등에의 通知)

회사는 제5조 제1항의 인정 및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빨리 발명자에게 소속장을 거쳐서 文書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7條(特許權 받을 權利의 讓渡義務)

發明者は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8條(異議申請 및 再認定의 通知)

- 발명자는 제5조 제1항의 인정에 대해 社長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 그 회사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임을 再認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발명이라고 이의를 인정할 때는 理由를 붙여서 그 발명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第9條(制限行為)

발명자는 회사가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이 아님을 인정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이긴 하나 그 특허의 받을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가 아니면 特許出願이나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第3者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第3章 補 償

第10條(補償金의 支拂)

회사는 회사로서 다음各號에 列舉하는 경우에 있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特許權을 取得했을 때는 그 특허권자의 관계되는 발명을 한 발명자에 대하여 심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정하는 補償金을 支拂키로 한다.

- (1)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이것을 특허출원했을 때
- (2)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이것이 登錄되었을 때
- (3) 회사가 특허권을 讓渡했을 때

第11條

회사는 회사가 직무발명에 依據한 특허권의 실시 또는處分에 의한 利益을 얻었을 때는 그 특허권에 관계되는 발명을 한 발명자에 대하여 심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하는 補償金을 지불한다.

第12條(共同發明者에 대한 補償)

前 2 項의 보상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발명자가 2人이상 있을 때는 각각 持分만큼 지불한다.

第13條(轉退職 또는 死亡했을 때의 補償)

제10조 및 제11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에 관계되는 발명자가 轉職하거나 退職한 후에도 存續한다.

2. 전항의 권리가 있는 발명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권리가 그 相續人에게 승계한다.

第14條(職務發明審査會의 設置)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사회를 두고 그 사무는 特許部(課)에서 管掌한다.

第15條(審議事項)

직무발명심사회는 社長의 諮問에 應하여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届出에 관계되는 직무발명의 규정 및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결정에 관한 것.
- (2) 보상금에 관한 것.
- (3)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것.
- (4) 職務發明規程의 改正 및 運用에 관한 것.
- (5) 其他 社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第16條(職務發明審査會의 組織)

직무발명 심사회는 會長·副會長 및 委員若干名으로써 조직한다.

2. 회장은 特許擔當任員이 맡아 會務를 總理한다.
3. 부회장은 特許部(課)長이 맡고 회장을 補佐하며 회장이 有故時には 그 직무를 代理한다.
4. 위원은 회사의 職員 가운데서 사장이 任命한다.
5. 발명자는 회장의 許可를 받아 직무발명심사회에 出席하여 그 발명에 대해 意見을 말할 수가 있다.

第5章 雜則**第17條(異議申請)**

발명자는 그 발명에 관계되는 제 5조 제 1항의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個月 以内에 사장에 대해 文書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2. 사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직무발명심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실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대하여 ○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18條(秘密의 保持)

발명자 및 직무발명심사회의 關係者는 발명의 내용과 기타 동 발명자 및 회사의 利害에 관계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期間中 그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第19條(職務發明이 아닌 發明)

회사는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규정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뜻이 提示되었을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거나 그 拒否를 결정해야 한다.

2. 제 3조, 제 7조, 제 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전 항의 발명에 準用한다.

第20條(囑託 및 臨時雇傭員의 取扱)

常勤囑託 또는 임시고용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이룩한 발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촉탁 또는 임시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되는 것은 종업원의 발명으로 看做하여 이 규정을 適用한다.

2. 非常勤囑託 또는 顧問이 회사의 업무에 관계있는 발명을 했을 경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인의 承諾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한다.

第21條(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관한 準用)

이 규정은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대해 準用한다.

第22條(外國出願의 取扱)

이 규정은 외국의 工業所有權을 對象으로 하는 발명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附 則

이 규정은 西紀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註: 이 規程은 日本의 各 企業에서 通用하고 있는 事例 가 운데서 日本特許廳이 典例로 試圖한 것을 移記한 것이다.

◇ 國外特許管理事例

日本의 (株)不二越

1. 會社名：株式會社 不二越
2. 業 種：一般機械器具製造業，工作機械，鐵鋼業（營業品目），工具，ベ어링，油壓機器，工業爐，工業用ロボット，減速機，特殊鋼，環境裝置。
3. 資本金：6,475,000,000원
4. 從業員數：5,450名
5. 特許部門의 位置：本社의 스릴部門인 技術本部 技術開發室에 所屬。

6. 特許部門의 沿革

과거에는 總務部 總務課에서 對官署業務의 一環으로 담당하고 工業所有權 業務는 외부(辨理士 등)에 의뢰하였으나 商標問題로 사전이 발생된 것을 계기로 하여 1957년에 社長室 企劃調查部내에 特許課를 창설, 特許管理를 전담시켰다. 그후 總務部, 管理室, 企劃室, 技術本部企劃室, 同技術開發室 등에 소속이 바뀌었으나 업무내용은 변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特許部門의 特徵

技術部門이나 공장의 대부분이 富山地域에 存在하고 토오쿄오나 오사카 등지에는 對需要處 관계의 营業技術關係者가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發明考案은 富山地域에서 이루어지나 特許專擔者는 토오쿄오에서 勤務하고 있다. 出願 등 특허업무는 원칙적으로 社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同社는 각 製作所, 製鋼所, 技術研究所가 있고 新製品開發은 技術本部에서 통솔하고 있어 이에서 제출되는 發明考案은 多種多樣하므로 特許擔當者は 폭넓은 기술적 이해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특허부문의 人員不足을 補完하기 위해서 그 協力機構로 각 製作所의 技術室마다 特許管理者를 두고 그 제작소 내의 特허관리를 담당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 관계의 最高審議機關으로서 綜合技術委員會 밑에 特許部會가 설치되어 있어 각 제작소마다 임명되어 있는 特許部會員과 정기적으로 會合하여 特허관리상의 모든 문제를 協議한다.

見様書의 製品製造販賣에 관해서는 반드시 特허부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特허부문이 창설된 이래 1件의 特許紛爭事件도 없었으나 이는 特許承認制度의 효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8. 業務處理方法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出願을 主要目標로 삼고 發明考案意慾을 高揚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출원에 유의하고 있다.

① 出願業務

國內出願은 모두 社内에서 처리하고 關係會社의 출원도 요구에 따라 취급하고 있다. 國外出願은 원칙적으로 辨理士 등 외부에 의뢰하고 있으나 商標關係는 貿易部의 협력을 얻어 社内에서 처리하고 있다. 發明者는 特許管理者의 지도를 받은 다음 特허판리자가 所屬長을 거쳐 技術開發室에 제출한다. 일단 제출된 발명은 特許部署에서 公知例 등을 참작하여 출원의 可否를 결정한다.

출원이 결정된 발명은 出願依賴書와 說明書를 特許部署에 제출하여 여기서 明細書를 작성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幅輞하는 발명에 대비하여 發明依賴者에게 명세서 작성에 편리하도록 설명서의 충실한 내용 기재의 요구와 지도를 하고 있다.

② 契約業務

契約業務는 각 사업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契約案의 협의에는 반드시 特허부서에 參與하여 特허판리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반영시키고 있다.

③ 特許情報의 收集, 利用, 管理

出願公告公報는 特허부서에서 신중히 조사하여 同社에 관계가 있는 것은複寫하여 관계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公報表紙에 표시하여 供覽시킨다. 과거의 공고공보는 마이크로필름을 購入하여 技術資料室에 보관하고 閱覽이나 복사에 응하고 있다.

公開公報도 特허부서에서 조사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복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公報는 각 製作所에 供覽시키고 있다. 公開公報 중 特許公報은 供覽시키지 않고 보관하여抄錄을 공람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合本公報를 分冊하여 관계 제작소에 배포하고 있으며 外國公報로는 美國의 오피피가제트와 英國의 에브리지를 定期購買하여 供覽시키고 索引類는 기술자료실에서 보관한다.

④ 其他

작년 가을부터는 特허부문의 專擔者를 常駐시켜 제작소와의 特許相談, 發明發掘 등의 지도, 협력을 강화하고 출원과 異議資料調査에 주력하고 있다.

9. 特許部員의 教育, 研修

日常業務를 통하여 實務指導와 더불어 特許協會의研修講座를 이용한다.